

## 공급업체 윤리강령

Cooper Standard는 단지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추구합니다. 회의실에서 구내식당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핵심 가치는 회사의 심장이자 영혼입니다.

Cooper Standard에서 다양한 인재, 성실성, 지역사회 파트너, 종합안전문화, 품질 및 지속적인 개선은 단순히 문서상의 단어가 아닙니다. 매일 어디서나 어떻게 작업하는지에 이 말의 참뜻이 있습니다.

Cooper Standard는 모든 공급업체가 공급망 관행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이하 '강령')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강령의 조항은 공급업체와 Cooper Standard,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간의 법적 협정이나 계약의 조항에 추가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가 하청업체, 제3자 용역업체 및 계약직 근로자와 계열노동자를 포함하는 자신의 공급망을 본 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지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강령은 공급업체, 하청업체, 해당 직원 또는 기타 당사자에 대해 제3자 수익권 또는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Cooper Standard는 사업 운영에서 법률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급업체가 당사, 당사의 자회사 및 시설과 함께 하는 각각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의 준수를 기대합니다.

법률의 요구사항과 본 강령의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각 공급업체는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실성

Cooper Standard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행동하며,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 및 관할 구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의 요청에 따라 본 강령의 준수를 입증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Cooper Standard, 자회사 및 계열사는 공급업체의 본 강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준수할 수 없거나 입증하지 않는 공급업체와의 계약 또는 합의를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 및 뇌물 방지:** 공급업체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포함한 모든 반부패 및 뇌물 방지법과 민간간의 뇌물 공여와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현지의 모든 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급업체는 뇌물, 리베이트, 청탁 또는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수락할 수 없습니다. 강요 또는 횡령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과 사무를

처리하거나 협의하는 경우 부적절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의 비즈니스 결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Cooper Standard 직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의할 수 없습니다.

**공정 경쟁 및 반독점:** 공급업체는 반경쟁 사업 관행과 관련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따라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장부와 기록:** 공급업체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 장부, 사업 기록 및 회계 장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를 대신하여 지불하였거나 Cooper Standard가 제공한 자금으로 지불한 모든 지출(선물, 식사, 접대 또는 기타 가치있는 모든 것 포함)에 대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요청 시 Cooper Standard에 회계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Cooper Standard 직원은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은 Cooper Standard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직원의 의무와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공급업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고용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 직원이 Cooper Standard 직원과 가족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 시누이/처제/처형/동서 또는 시동생/처남, 손자, 동거인)이거나 공급업체가 Cooper Standard 직원과 이해 상충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관계인 경우,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비보복:**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와 함께 일하면서 습득한 준법감시 또는 윤리 문제를 보고하거나 불만사항 조사에 선의로 협조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

**분쟁 광물:** 공급업체는 업스트림 공급망 규정준수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분쟁 광물'로 지정한 주석, 텅스텐, 탄탈, 금 또는 기타 물질이나 파생물을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한, Cooper Standard, 자회사 및 계열사에 공급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요 출처까지 공급망 매핑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체는 분쟁광물이 콩고민주공화국(DRC) 밖에 위치한 광산과 제련소에서 유래한 것인지, 인접국(총칭하여 '분쟁지역')에서 유래한 것인지 혹은 분쟁지역 내에서 공급받는 경우라면, 인증제도에 따라 독립적인 제3자가 인정된 DRC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광산 및 제련소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현재 실사 수행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한다는 미래의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요청시 Cooper Standard에 모든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합니다.

**기밀 유지 및 데이터 보안:** 공급업체는 (종이,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관계없이) 당사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의 일환으로 기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가 승인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이 정보를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Cooper Standard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Cooper Standard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정보를 사용하여 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Cooper Standard 또는 제3자의 기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실수로 부여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즉시 Cooper Standard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보가 더 이상 배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업체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Cooper Standard의 어느 누구와도 다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 공급업체는 익명 신고를 포함하여 작업장 불만사항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 프로세스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법률이나 본 강령의 실제 혹은 의심되는 위반사항을 Cooper Standard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업체 또는 Cooper Standard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직원 또는 에이전트의 실제 혹은 의심되는 위반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와 회사의 관계는 잠재적 불법 행위에 대한 정직한 보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우려 사항을 보고하려면 [www.CSIntegrityLine.com](http://www.CSIntegrityLine.com)을 방문하여 온라인 및 국제전화 옵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 및 직원은 또한 [ethicsandcompliance@cooperstandard.com](mailto:ethicsandcompliance@cooperstandard.com) 사이트를 통해 Cooper Standard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인권

Cooper Standard는 각 공급업체가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자기본권선언(1998) 및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제 노동:** 공급업체는 노예적, 강제적, 담보적, 속박 계약적 또는 비자발적인 그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인신매매나 착취 또는 노예제나 인신매매로 오염된 물품의 수입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조건으로 정부 발행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허가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동 노동:** 공급업체는 자신의 재화나 용역의 조달, 생산 또는 유통에 미성년 노동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현지 법이 허용한다 할지라도 15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 초과 근무 또는 야간 교대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공급업체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한,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권과 어떤 그룹과도 결사하거나 결사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고용 상태:** 공급업체는 영업장과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근로자만 고용하고 적절한 문서를 통해 근로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별 금지 및 공정한 대우:** 공급업체는 다양한 인력을 장려하고 공정성, 존엄성 및 존경심으로 직원을 대우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불법적인 차별, 희롱 또는 학대도 없어야 합니다.

**임금 및 혜택:**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임금, 초과 근무 수당, 특별 수당 및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복리 후생을 포함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적시에 지불해야 하며 징계를 사유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시간:** 공급업체는 최대 근무시간 및 초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근무시간을 규제하는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근로자에게 현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휴일과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종합안전문화 및 기업의 책임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 제품 및 절차에 중점을 두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보장합니다.

**건강 및 안전:** 공급업체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정중한, 깨끗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포괄적인 보건 및 안전 관리 관행 그리고 직무별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및 안전 교육을 비즈니스에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고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해로운 근로조건을 보고할 권리를 직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각 공급업체는 이 분야의 관련 법 및 업계 표준을 충족하거나 능가합니다.

공급업체는 작업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공급 업체는 모든 현지 법 및 국내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환경:** 공급업체는 폐기물 처리, 배출, 유해 및 독성 물질 처리와 관련된 법률과 국제 조약을 포함한 모든 환경 법률에 따라 시설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시설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 측정 및 최소화하며 오염물질의 대기배출 분야, 폐기물의 감소, 회수 및 관리 분야, 용수의 사용과 처리 분야, 에너지 소비 분야,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원을 보존하고, 자원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유럽의 REACH, RoHS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재료데이터시스템(IMDS)과 같은 모든 화학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체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가능성 요구 사항:

공급업체는 자체 공급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러한 강력

또는 이와 유사한 강령을 전달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속가능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Cooper Standard는  
또한 공급업체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와  
전략을 시행하도록 장려합니다.

귀하는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 공급업체 윤리강령을 읽었으며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공급업체 회사명: \_\_\_\_\_

회사 대표 서명: \_\_\_\_\_

회사 대표 이름 (기입): \_\_\_\_\_

날짜: \_\_\_\_\_